

2023년 여산면 종합감사 결과 보고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3. 10. 17. ~ 10. 19. (3일간)
- 감사범위 : 2021. 3. 1. ~ 2023. 8. 31.
- 감사반 : 감사계장 등 4명
- 감사중점
 - ▶ 예산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사회복지, 산업, 주민자치 분야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
 - ▶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처리 적정 여부 등

II 지적사항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총 12 건	주의 8 시정 4	세입 1 반환 1 회수 2 (●●●●)	주의 ○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2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예산절감 노력 소홀	주의		
3	신용카드 연체 등 회계처리 소홀	시정	세입 (▲▲천원)	주의 ■
4	주민자치 관련 업무 소홀	주의		
5	이장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천원)	
6	장애인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주의		
7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관리 업무 소홀	주의		주의 ■ (병합)
8	인감도장 규격 미준수 및 인감증명 발급대장 미기재	주의		
9	이해관계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 부적정	주의		
10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시정	반환 (▲▲천원)	
11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천원)	
12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선정 업무 처리 소홀	주의		주의 ■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2조제1호 가목(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규칙〔별표1〕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관련 경비에 따르면 축·부의금의 지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관내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때 관내 업무 유관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근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축의 부의금품 지급대상 범위는 사망 또는 결혼에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여산면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축·부의금 집행대상으로 이장 및 주민자위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해당 되지 않음에도 **마을 이장 자녀 축의금 등으로 ☆건, ●●●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2.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예산절감 노력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따르면〔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 납부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요금의 조회·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요금 전자고지서 발급을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200원을 할인해주는 인터넷 빌링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8조(상수도요금의 할인) 및 「익산시 하수도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2(하수도 사용료의 할인)에 따르면 시장은 상하수도 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 이체로 납부하는 상하수도 사용자 등에 대하여 사용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항에 따라 자동차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매년 1월(16일~31일) 기간 중 연납 신청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에도,

▶ 여산면에서는 관용차량(☆모☆☆, ☆너☆☆)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 10% 감면 없이 지출하고 있으며, 가람어울림센터 등에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집행하면서 자동납부 및 인터넷 빌링신청을 통해 공공요금 절약 지출이 가능함에도 2021년 ~ 감사일 현재까지 고지서로 지출하고 있음.

3. 신용카드 연체 등 회계처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별표4〕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 이용 대금 결제 계좌로 입금 조치하고,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 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 조치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제)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결제일까지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여야 함.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의하면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청구된 공공요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정하여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부담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그러나 여산면에서는 결제일 내에 정상처리하였어야 하나 담당자 부주의로 지연 입금하여 이에 따른 연체료 ●원이 공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카드결제 통장에 2021년 발생한 착오입금액을 당해연도에 지출 처리하지 않고 감사 종료일 현재까지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4. 주민자치 관련 업무 소홀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보고)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여산면에서는 매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과 반기별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여산면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게 보고하는 등 주민자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이장수당 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조(기준경비) [별표4]에 따라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7조(실비보상) 규정에 따르면 통·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지급하며, 통·이장 변경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방법을 조례 등의 관련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여산면에서는 이장이 도중에 변경된 경우 일할계산 방식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감사기간 동안 신규 임명된 이장에게 이장수당을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등 이장수당 지급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장애인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항에 의하면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의 확인)에 의하면 시장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하나,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2022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진단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해야 하며,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2주간의 의견청취를 받고,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여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그러나 여산면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일이 도래한 ●●●등 ☆명에게 재판정 통보기준일(재판정 기한일 3개월前)보다 최장 △일까지 지연하여 안내하였고, 재판정 1개월 전까지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 대상자 ☆명에 최장 △일 지연하여 재판정 촉구를 통지한 사실이 있음.

7. 장애인복지(통합)카드 관리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등록을 받은 사람이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 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에 따르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를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여산면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사망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명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증 반환통보서 미발송으로 인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8. 인감도장 규격 미준수 및 인감증명 발급대장 미기재

-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 신고 등)에 따르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며,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제5조(인감의 제한)에 따르면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본인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르면 인영의 명의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규정에 의한 성명 외에 문자나 부호, 그림 등의 표현을 수리할 수 없으며 다만 성명의 인식을 훼손하지 않는 테두리와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온 글자인 “印, 章, 信” 도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여산면 인감변경 신고대장을 확인한 결과, 성명 외 문자나 부호, 그림 등의 표현을 수리하지 않았어야하나, 성명 외 “육군”, “●” 등의 기호, 숫자 등이 기재된 도장을 인감으로 △건 등록하였고, 신고인의 성명과 다른 도장을 반려 및 보완요청 없이 부적정하게 수리하는 등 인영 등록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 등 △건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 처리하면서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의 무인을 날인 받지도 않은 사실이 있음.

9. 이해관계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으나, 본인 또는 위임이 있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의 법령상 사유가 있을 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청서 기재내용 및 관련 입증서류 검토 후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 1] ‘제출서류 등’에 따르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고,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행정안전부)’에는 변제 기일이 지나지 않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0호 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로 신청할 경우에 변제기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타란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명시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관계기관장이 발급 하였다면 초본이 발급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여산면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과 함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및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나 반송된 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가 누락되었음에도 보완요청 없이 그대로 발급하였고,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명시된 경우 발급하였어야 하나,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자의 초본을 부적정하게 발급하는 등 이해관계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0.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1항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2항에 규정에 따르면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분실 등에 의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및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호에 의해 수수료가 면제되며, 보안 미적용 증(2006.11.1.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 시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보안기능 추가’로 선택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음.

- ▶ 따라서 해당 업무의 담당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대상자가 수수료 징수 또는 면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여산면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임에도 수수료를 과다 징수(△건 / ●●●원)하는 등 민원 수수료를 징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1.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기본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 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과 그 밖의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같은 법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제2항 및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지급대상 농지 자격검증 시 확인되는 농어촌공사로부터 확인한 농지 보전부담금이 납부된 농지의 부적합 안내 결과와 더불어 기본직불 등록된 농지 중 새올행정시스템에 농지의 전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농지를 등록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시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농지전용 여부 검증 결과와 함께 새올행정시스템의 농지 전용 현황을 확인하여 농지전용 면적을 제외하고 지급했어야 함에도, 여산면에서는 기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면서 농지전용이 신고된 농지의 전용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12.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선정 업무 처리 소홀

- 「여성농업인생생카드 지원사업 지침」(전라북도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사업 추진 이전연도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어가,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 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제외 대상이며, 각 읍면동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생생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생생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여산면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을 접수받아 유사 복지 서비스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문화누리카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아닐 경우 제외대상으로 통보하거나 반려했어야 함에도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화누리카드 지원 수혜자인 ● 외 △명에게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다.